



제 67 호  
2017년4월6일(목)

# 여수시보

## 시정방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 목 차

####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7-85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 지형도면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7-86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형도면고시 /8
- 여수시 고시 제2017-8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1

####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7-740호 2017년 방치선박 제거 공고문 /12
- 여수시 공고 제2017-742호 여수시 용수구역위원회 위원 선정 및 명단 공개 /19
- 여수시 공고 제2017-743호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1
- 여수시 공고 제2017-750호 여수시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7
- 여수시 공고 제2017-752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금봉리 1064-3] /31

회 람								
--------	--	--	--	--	--	--	--	--

##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4. 6.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 지형도면 조서 : 다음
2.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 지형도면 조서

###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 경	변경 후		
총계		705,942	-	705,942	100.0	
주거 지역	소계	254,781	-	254,781	36.1	
	제1종전용주거지역	61,898	-	61,898	8.8	
	제1종일반주거지역	167,350	-	167,350	23.7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01	-	13,701	1.9	
	준주거지역	11,832	-	11,832	1.7	
상업 지역	소계	99,548	-	99,548	14.1	
	일반상업지역	99,548	-	99,548	14.1	
공업 지역	소계	266,815	-	266,815	37.8	
	준공업지역	266,815	-	266,815	37.8	
녹지 지역	소계	84,798	-	84,798	12.0	
	자연녹지지역	84,798	-	84,798	12.0	

나. 용도지구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m <sup>2</sup>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4	돌산우두 1지구	수변 경관지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55-23번지	21,314	-	-	-	
신설	5	돌산우두 2지구	수변 경관지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61-15번지	24,486	-	-	-	단, 건축물 높이는 교량 상관하부 미만
신설	6	돌산대교 동단	수변 경관지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816번지	13,268	-	-	-	단, 건축물 높이는 교량 상관하부 미만
신설	7	남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여수시 남산동 225-2번지	28,722	-	-	-	
신설	8	고소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여수시 고소동 264-1번지	93,219	-	-	-	
신설	9	종화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여수시 종화동 626번지	47,051	-	-	-	
신설	10	돌산우두 3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89-2번지	35,844	-	-	-	
신설	11	돌산우두 4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52번지	38,113	-	-	-	

■ 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돌산우두 1지구	수변경관지구 신설(A=21,314m <sup>2</sup> )	• 돌산공원 등 수변축 해안 등의 경관을 유지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수변경관지구 로 지정
5	돌산우두 2지구	수변경관지구 신설(A=24,486m <sup>2</sup> )	• 거북선대교 등 수변축 해안 등의 경관을 유지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수변경관지구로 지정
6	돌산대교 동단	수변경관지구 신설(A=13,268m <sup>2</sup> )	• 돌산대교 및 돌산공원의 경관을 유지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수변경관지구로 지정
7	남산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신설(A=28,722m <sup>2</sup> )	• 일반주거지역의 기존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고자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
8	고소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신설(A=93,219m <sup>2</sup> )	• 일반주거지역의 기존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고자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
9	종화 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신설(A=47,051m <sup>2</sup> )	• 일반주거지역의 기존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고자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
10	돌산우두 3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신설(A=35,844m <sup>2</sup> )	• 전용주거지역의 기존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고자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
11	돌산우두 4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신설(A=38,113m <sup>2</sup> )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기존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고자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27	남산지구	최고 고도지구	여수시 남산동 58번지	12m 이하 (단, 건축물 높이는 교량 상판하부 미만)	18,347		※건축물의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설	28	남산지구 (1)	최고 고도지구	여수시 남산동 75-4번지	12m 이하	7,383		※건축물의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설	29	남산 중앙지구	최고 고도지구	남산동 667 일원~ 고소동 282-1 일원	20m 이하	94,985		※건축물의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설	30	종화지구	최고 고도지구	여수시 종화동 458-5번지	16m 이하	30,460		※건축물의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설	31	거북선 대교 남단	최고 고도지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80번지	20m 이하 (단, 건축물 높이는 교량 상판하부 미만)	46,473		※건축물의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설	32	돌산우두 5지구	최고 고도지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89-10번지	20m 이하	83,075		※건축물의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설	33	돌산우두 6지구	최고 고도지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6-24번지	20m 이하	16,395		※건축물의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정	10	중앙동 2호광장	최고 고도지구	중앙동 2호광장 일원	현 지반고에서 13m 이하	11,500	건고560호 87.11.14	
변경	10	중앙동 2호광장	최고 고도지구	중앙동 2호광장 일원	13m 이하	8,310		※건축물의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정	11	남산동	최고 고도지구	남산동 항만시설 보호지구 일원	현 지반고에서 13m 이하, 4층 이하	38,880	전고-241호 04.12.31	
변경	11	남산동	최고 고도지구	남산동 항만시설 보호지구 일원	16m 이하	48,767		※건축물의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정	13	고소동	최고 고도지구	고소동 준공업지역	현지반고에서 13m 이하, 4층 이하	9,955	전고-241호 04.12.31	
변경	13	고소동	최고 고도지구	고소동 준공업지역	12m 이하	44,092		※건축물의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정	26	수산시장	최고 고도지구	남산동 항만시설 보호지구 일원	현 지반고에서 24m 이하, 8층 이하	12,050	전고-220호 09.05.04	
변경	26	수산시장	최고 고도지구	남산동 항만시설 보호지구 일원	20m 이하	13,948		※건축물의 건축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남산지구	최고고도지구 신설 (A=18,347m <sup>2</sup> )	• 랜드마크시설의 경관유지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지정
28	남산지구(1)	최고고도지구 신설 (A=7,383m <sup>2</sup> )	• 구릉지에 입지한 집단취락의 수변경관관리 및 건축물 용도의 이중적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지정
29	남산중앙지구	최고고도지구 신설 (A=94,985m <sup>2</sup> )	• 종포해양공원의 기능 및 경관의 차단을 방지하고 수변경관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 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30	종화지구	최고고도지구 신설 (A=30,460m <sup>2</sup> )	• 근린공원(자산공원)의 경관침해 방지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전체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31	거북선대교 남단	최고고도지구 신설 (A=46,473m <sup>2</sup> )	• 랜드마크시설(거북선대교)의 조망경관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수변경관에 대한 경관유지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
32	돌산우두 5지구	최고고도지구 신설 (A=83,075m <sup>2</sup> )	• 수변경관을 보전하고자 준공업지역의 고층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지정
33	돌산우두 6지구	최고고도지구 신설 (A=16,395m <sup>2</sup> )	• 돌산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 및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의 고층화를 차단하고자 최고고도지구 지정
10	중앙동 2호광장	최고고도지구 면적감소(A=8,310m <sup>2</sup> )	• 최고고도지구 신설계획에 따른 면적감소
11	남산동	최고고도지구 면적 및 제한사항 변경 (A=48,767m <sup>2</sup> )	• 구적오차정정으로 인한 면적증가 및 수변경관의 유지, 준공업지역의 고층화를 차단하기 위해 최고고도지구 제한내용 변경
13	고소동	최고고도지구 면적 및 제한사항 변경 (A=44,092m <sup>2</sup> )	• 해안경관관리를 위한 최고고도지구 면적증가 및 제한사항 강화
26	수산시장	최고고도지구 면적 및 제한사항 변경 (A=13,948m <sup>2</sup> )	• 구적오차정정으로 인한 면적증가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수변경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여수수산물 특화시장과 그 일대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제한사항 강화

## 여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4. 6.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형도면 조서 : 다음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여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형도면 조서

###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가. 교통시설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8	35	주간선 도로	5,700	월산리 412-1묘	가장리 60답	일반 도로	진고-133호 97.05.20	
변경	대로	1	8	35	주간선 도로	4,711	산수리 산256-6	가장리 60답	일반 도로		
기정	대로	2	8	30	보조 간선	855	근린공원185 조화리58-2철	대1-1 월산리395-4도	일반 도로	진고-145호 82.04.22	폭원 및 일부구간 축소
변경	중로	2	169	15	보조 간선	287	월산리1515	월산리395-3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	170	15	보조 간선	145	조화리58-18	조화리74-6	일반 도로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8	대로 1-8	○연장 변경 - 연장 : 5,700m → 4,711m	○장기미집행시설로써 미집행구간에 과도한 지장물 등이 위치하여 개설이 어려워 축소변경
대로 2-8	중로 2-169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30m → 15m - 연장 : 855m → 287m	○장기미집행시설로써 도로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되어 현황여건을 고려한 연장 및 폭원 축소변경
대로 2-8	중로 2-170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30m → 15m - 연장 : 855m → 145m	○장기미집행시설로써 도로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되어 현황여건을 고려한 연장 및 폭원 축소변경

#####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장동 780-2대	28,403	감)28,403	-	진고-9호 1992.1.25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자동차정류장	○시설 폐지 A=28,403m <sup>2</sup>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으로써 주변현황을 고려하고 기능이 상실 되어 기능수행이 어려운 자동차 정류장 폐지

나.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9	광장	교통광장	울촌면 월산리 777입	74,274	-	74,274	건고-241호 04.12.31	울촌IC
변경	39	광장	교통광장	울촌면 월산리 777입	74,274	감)1,244	73,030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9	광장	○면적 변경 - 면적 : 74,274m <sup>2</sup> → 73,030m <sup>2</sup>	○대로1-8호선 구간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 현황을 감안하여 현지여건에 맞게 광장 축소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연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폐지	21	녹지	경관 녹지	중흥동	8,640	감)8,640	-	건고-752호 89.12.21	
2	폐지	102	녹지	완충 녹지	평여동 578-3일원	11,730	감)11,730	-	건고-126호 04.08.05	
3	폐지	103	녹지	완충 녹지	중흥동 88-17일원	9,173	감)9,173	-	건고-126호 04.08.05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경관녹지	○ 시설 폐지 A=8,640m <sup>2</sup>	○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외를 연결하는 녹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산단내 녹지 : 공장용지로 변경)에 따라 시설의 설치 실효성이 상실된 녹지
102	완충녹지	○ 시설 폐지 A=11,730m <sup>2</sup>	○ 기 개발이 완료된 공장부지 인근의 녹지로서 주변여건상(보전녹지) 시설 설치의 실효성이 상실된 녹지
103	완충녹지	○ 시설 폐지 A=9,173m <sup>2</sup>	○ 여수국가산업단지(연관단지) 개발계획(중흥지구)이 확정됨에 따라 개발계획에 미반영 된 실효성이 상실된 녹지(국토부고시 제2015-725호, 2015.10.06.)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허가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m <sup>2</sup> )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기간	피 허가 자		비고
					주 소	성 명	
2017-33 (17. 4. 5.)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145-29 번지 지선	375.6 (직접 197.6. 간접 178)	어구적재 및 어선 접안시설 설치	'17. 4. 6.~ '22. 4. 5.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563	곽명길	

2017. 4. 6.

여 수 시 장

# 공 고

본 선박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해양오염유발 및 항내 미관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자진제거하지 않을시 우리시가 직권으로 제거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방치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어선원부에 기재된자)이 있을경우 2017년 4월 21일까지 여수시 청 돌산청사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

2017. 4. 6.

여 수 시



1. 공고기간 : 2017. 4. 6. ~ 2017. 4. 21.
2. 공고사항

관리번호	선명	선질	톤수	방치장소	비고
2017-	미상	목	약2.0톤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583번지 인근 해상	
2017-	미상	목	약1.0톤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산52-1번지 인근 해상	
2017-	미상	목	약2.0톤	여수시 화양면 감도길 31 인근 해상	
2017-	미상	목	약1.0톤	여수시 화양면 참새미길 19 인근 해상	
2017-	미상	FRP	약2.0톤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525번지 인근 해상	

공고 제2017- 호				
<b>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b>				
발견 장소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583번지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 상	선박(어선)번호	미 상
	선적항	미 상	톤 수	약 2톤(목선)
	주요치수	길이(6.7m), 너비(2.20m), 깊이(1.4m)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17- 호	
방 치 기 간	2014년 ~ 현재까지			
제 거 예 정 일	2017년 4월 21일 이후			
제 거 사 유	해양오염유발 및 해양경관 훼손			
제 거 방 법	<b>직권 제거</b>			
방치선박 전경사진				
<p>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해양오염유발 및 해안경관을 훼손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자진제거하지 않을시 우리시가 직권으로 제거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방치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어선원부에 기재된자)이 있을경우 2017년 4월 21일까지 여수시청 돌산청사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년 4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여 수 시 장</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과 : 수산경영과, 전화번호 : 061-659-3923)</p>				

공고 제2017- 호				
<b>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b>				
발견 장소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산 52-1번지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 상	선박(어선)번호	미 상
	선적항	미 상	톤 수	약 1톤(목선)
	주요치수	길이(4.8m), 너비(1.4m), 깊이(0.5m)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17- 호	
방 치 기 간	2014년 ~ 현재까지			
제 거 예 정 일	2017년 4월 21일 이후			
제 거 사 유	해양오염유발 및 해양경관 훼손			
제 거 방 법	<b>직권 제거</b>			
방치선박 전경사진				
<p>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해양오염유발 및 해안경관을 훼손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자진제거하지 않을시 우리시가 직권으로 제거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방치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어선원부에 기재된자)이 있을경우 2017년 4월 21일까지 여수시청 돌산청사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년 4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여 수 시 장</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과 : 수산경영과, 전화번호 : 061-659-3923)</p>				

공고 제2017- 호				
<b>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b>				
발견 장소	여수시 화양면 감도길 31 앞 해상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 상	선박(어선)번호	미 상
	선적항	미 상	톤 수	약 2톤(목선)
	주요치수	길이(6m), 너비(2m), 깊이(0.7m)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17- 호	
방 치 기 간	2014년 ~ 현재까지			
제 거 예 정 일	2017년 4월 21일 이후			
제 거 사 유	해양오염유발 및 해양경관 훼손			
제 거 방 법	<b>직권 제거</b>			
방치선박 전경사진				
<p>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해양오염유발 및 해안경관을 훼손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자진제거하지 않을시 우리시가 직권으로 제거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방치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어선원부에 기재된자)이 있을경우 2017년 4월 21일까지 여수시청 들산청사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년 4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여 수 시 장</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과 : 수산경영과, 전화번호 : 061-659-3923)</p>				

공고 제2017- 호				
<b>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b>				
발견 장소	여수시 화양면 참새미길 19 앞 해상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 상	선박(어선)번호	미 상
	선적항	미 상	톤 수	약 1톤(목선)
	주요치수	길이(6.5m), 너비(1.9m), 깊이(0.8m)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17- 호	
방 치 기 간	2014년 ~ 현재까지			
제 거 예 정 일	2017년 4월 21일 이후			
제 거 사 유	해양오염유발 및 해양경관 훼손			
제 거 방 법	<b>직권 제거</b>			
방치선박 전경사진				
<p>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해양오염유발 및 해안경관을 훼손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자진제거하지 않을시 우리시가 직권으로 제거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방치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어선원부에 기재된자)이 있을경우 2017년 4월 21일까지 여수시청 돌산청사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년 4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여 수 시 장</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과 : 수산경영과, 전화번호 : 061-659-3923)</p>				

공고 제2017- 호				
<b>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b>				
발견 장소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525 번지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 상	선박(어선)번호	미 상
	선적항	미 상	톤 수	약2톤(FRP)
	주요치수	길이(6.7m), 너비(1.9m), 깊이(1m)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17- 호	
방 치 기 간	2014년 ~ 현재까지			
제 거 예 정 일	2017년 4월 21일 이후			
제 거 사 유	해양오염유발 및 해양경관 훼손			
제 거 방 법	<b>직권 제거</b>			
방치선박 전경사진				
<p>위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해양오염유발 및 해안경관을 훼손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자진제거하지 않을시 우리시가 직권으로 제거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방치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어선원부에 기재된자)이 있을경우 2017년 4월 21일까지 여수시청 돌산청사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년 4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여 수 시 장</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과 : 수산경영과, 전화번호 : 061-659-3923)</p>				

# 공 고

농어촌 정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여수시 용수구역 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 선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용수구역 위원 선정 및 명단 공개 공고

1. 공고기간: 2017. 4. 6. ~ 4.22.(15일간)
2. 위원 선정 및 명단공개 내역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위촉기간	비고
1	위 원 장	여수시 부시장	최종선	당연직	
2	부위원장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조일수	당연직	
3	위 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동균	당연직	
4	"	건설방재과장	장세길	당연직	
5	"	기후환경과장	송성현	당연직	
6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유재욱	당연직	
7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김대연	'17. 5. 1.~'19. 4.30.	
8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김태중	'17. 5. 1.~'19. 4.30.	

※ 간사: 농업기반팀장 최홍식

**3. 위원역할:** 여수시 용수구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함

- 농어촌 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 용수 이용현황 관리
- 용수의 확대 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지정
-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4. 문의사항:** 여수시 건설방재과(☎ 659-4051)

# 공 고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6.

## 여 수 시 장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표현 및 차별 조항 일부를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 2.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 법령 개정 : 제5조제1호
- 상위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
  - 제3조(사업의 내용), 제7조(보험가입)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적합한 조항 개정
  - 제5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
  - 제8조(준용규정)

3. 입법예고기간 : 2017. 4. 6. ~ 2017. 4. 25.(20일간)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청사)

- 받는 사람 : 여수시장(사회복지과장)

- 전 화 : 061)659-3656, 팩스 : 061)659-5820

- 이 메 일 : carbon@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쌍봉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학동서4길 58-20(학동)
2. 소라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14
3. 문수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여문2로 11-10(문수동)
4. 미평사회복지관 : 여수시 미평로 77-1(미평동)

제3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의 질서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한 사람
4. 복지관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3.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전부반환
2.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시작일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부반환
3.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시작일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 용 료 (제6조 관련) (개정 2012. 12. 31)

구 분	이 용 료		비 고
	기 준	금 액(원)	
기능교육	1명 / 1개월	40,000원 이내	교육난이도, 강좌특성, 수강정원 등에 따라 수강료 결정
강 당	1회 / 3시간	20,000원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매시간 10,000원 가산

## 여수시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내 시설물 관리 및 민원인 보호,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6일

# 여 수 시 장

### 1. 설치목적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내 시설물 관리 및 민원인 보호,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용 CCTV를 설치 하고자 함.

### 2. 관련법령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사 업 명: 여수시청 방호용 CCTV 설치

- 위 치: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시행청: 여수시 회계과

4.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30일이내 영상자료 보관)

5. 공고방법: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6. 행정예고기간: 2017. 4. 7. ~ 2017. 4. 26.(20일간)

7. 설치장소: 여수시청 내(세부사항 '붙임 1,' 참조)

- CCTV 설치대수 : 33대

####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17. 4. 7. ~ 2017. 4. 26.(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메일

※ 우편은 제출기한 내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및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라. 제출기관: 여수시 회계과

○ 주 소: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 전 화: 061-659-3222

○ 팩 스: 061-659-5808

○ 메 일: [sirius4h@korea.kr](mailto:sirius4h@korea.kr)(담당자 김명훈)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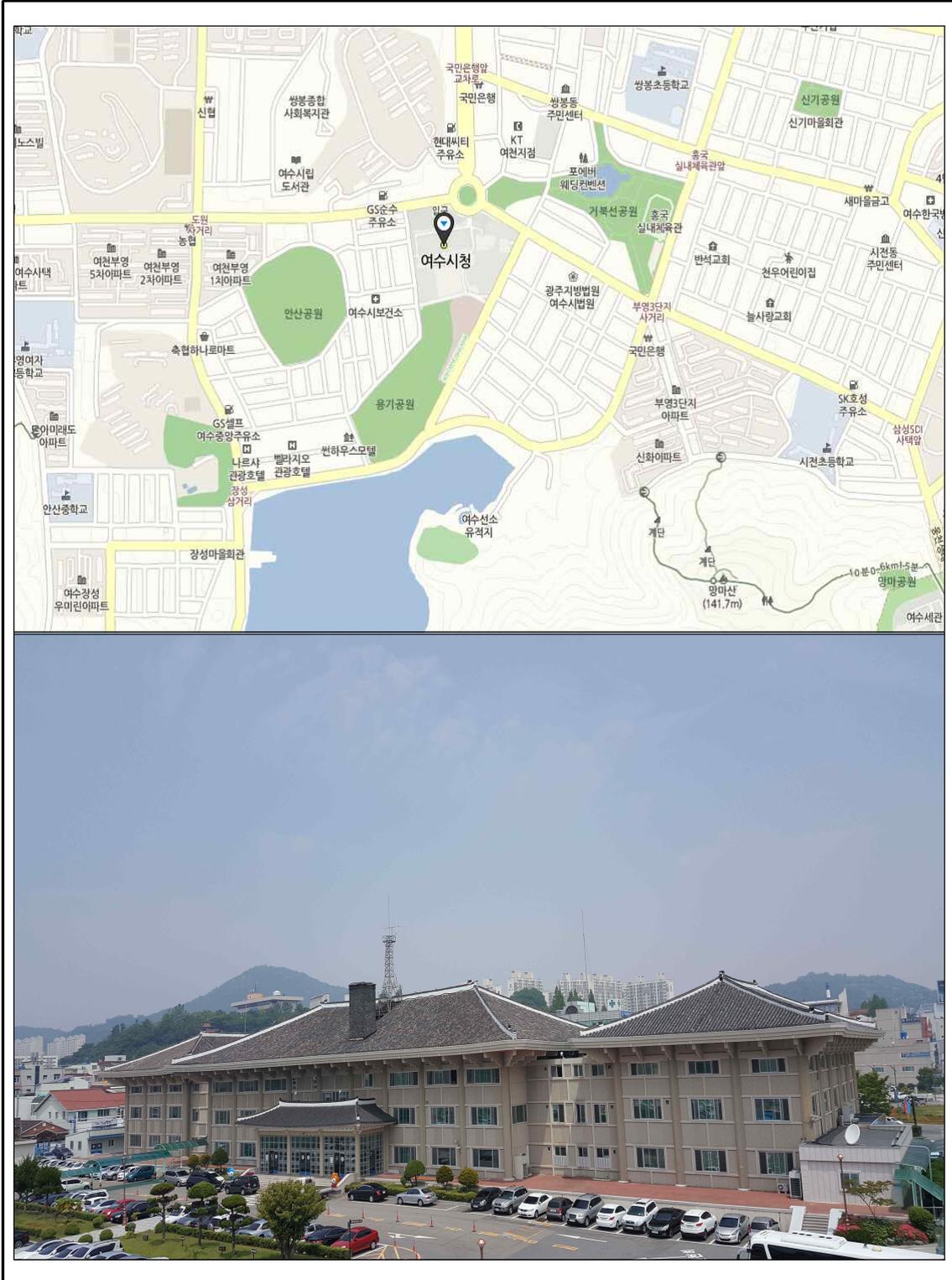
○ 여수시 회계과 담당자 김명훈(☎061-659-3222)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장 각 1부.

2. 의견 제출서(서식). 끝.

# 위치도 및 사진대장



**【붙임 2】**

<b>의견제출서</b>				
사업명	여수시청 방호용 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p>여수시청 방호용 CCTV 설치관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출자 :                    (서명 또는 인)</p> <p>여수시장 귀하</p>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1064-3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28.19m	4.0m	17.00㎡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돌산읍 금봉리	1064-3	28.19m	4.0m	17.00㎡	“	
이 하 빈 칸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6.

여 수 시 장